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5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4. 11.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조건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의 「여행정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여행정보(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 뿐만 아니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반드시 도달하기 위한 경로의 「여행정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여행정보(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까지 확대하고,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시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규정 신설 등 우수수입업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기간 연장 시 우대조치 일시중단 조항 신설(안 제8조)

우수수입업소에 부여하는 우대조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위생점검 수행 등 사전안전관리 기여도를 인정하여 부여하는 혜택으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시,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기간 연장 조건 확대(안 제8조제6항)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가 「여행
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509호(2024.11.4. ~ 2024.11.25.)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4-5314호, 2024.10.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89호, 2023.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8항”을 “제4조제9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생 관리 상태 점검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의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

2.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에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 포함된 경우

⑦ 제6항의 경우 여행경보단계가 1단계(남색경보), 2단계(황색경보)로 조정되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때에는 우대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조치 일시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이 유예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해서는 당시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제8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등록절차 등) ① (생략)</p> <p>1. ~ 3. (생략)</p> <p>4. 점검표 및 관련 <u>증빙자료</u></p> <p>② ~ ⑤ (생략)</p> <p>제8조(준수사항) ① ~ ④ (생략)</p> <p>1. ~ 3. (생략)</p> <p>4. 점검표 및 관련 <u>증빙자료</u></p> <p>⑤ (생략)</p> <p>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u>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가 「여행정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에는 위생점검기간을 연장할 수</u></p>	<p>제1조(목적)----- ----- ----- -----<u>제4조제9항</u> ----- ----- -----.</p> <p>제5조(등록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증명자료</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준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증명자료</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의 우대 조치를 일시 중</u></p>

있다. 이 경우 여행정보단계가 1단계(남색경보), 2단계(황색경보)로 조정되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해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생략)

단 할 수 있다.

1.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가 「여행정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

2.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에 「여행정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 포함된 경우

⑦ 제6항의 경우 여행정보단계가 1단계(남색경보), 2단계(황색경보)로 조정되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때에는 우대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